

●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-69호

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7월 22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

□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부과 대상 사업자

순 번	사 업 자 명	등 록 일
1	(주)에스와이에스리테일	2026. 7. 10.
2	주식회사 커뮤니티코리아	2026. 7. 16.

□ 등록조건

-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상시 준수 할 것

○ 등록기관의 등록요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및 기간통신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 시에는 성실히 응할 것

○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본인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(얼굴정보 등)를 활용한 본인인증 수단을 포함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.

다만, 생체정보의 수집·이용·보관·파기 등 처리 과정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○ 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3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)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기간통신역무의 제공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)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.